

악기도서관 운영규정(안)

제 정 2017. 01. 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민의 음악적 활동 능력향상과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설립된 ‘악기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처리 기준 마련 및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악기도서관의 명칭은 “악기랑”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도안과 약칭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악기도서관’의 기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용한다.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기도서관”이란 시민의 음악적 문화향유 확대를 위하여 시민에게 제공되는 악기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대여자”란 악기의 대여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대여료”란 악기의 대여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기부악기”란 제5호의 기부자를 통해 받은 악기를 말한다.
5. “기부자”란 개인, 기업, 단체 등이 악기랑에 악기를 기부한 사람을 말한다.
6. “협력 악기사”란 내부 선정 과정을 통해 ‘악기도서관’과의 MOU 협약을 맺은 악기사를 말한다.

제5조(사업) 개인, 단체,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받은 악기를 다시 시민에게 대여함으로써 시민의 음악적 문화생활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단체, 기업 등의 악기기부
2. 악기의 수리 및 관리
3. 악기의 대여
4. 그 밖에 악기와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대여기간 및 대여료) 대여기간 구분 및 대여료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세칙에 따른다.

제7조(대여료 특례) 약기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료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2. 학교, 공공기관 등 공공교육을 시행하는 기관과 단체
3. 대표이사가 공공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

제8조(대여자 준수사항)

1. 대여자는 대여 받은 약기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재 대여의 행위를 할 수 없다.
2. 대여자 준수사항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세칙에 따른다.

제9조(대여의 제한 및 중지) ‘재단’은 약기의 대여를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으며, 제한 및 중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세칙에 따른다.

제10조(세부운영지침) 약기도서관 운영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규정에 준하여 별도의 세칙을 정할 수 있다.

악기도서관 운영세칙(안)

제 정 2017. 01. 12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악기도서관’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에 근거한 대여 및 악기의 사용, 악기 기부, 악기 관리 및 수리 운영 전반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이용시간) ① ‘악기도서관’ 이용시간은 다음 호와 같다.

1. 화요일~토요일 : 10:00 ~ 17:00
2. 일요일, 월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관

② 정기 휴무일 이외 별도로 ‘악기랑’의 안정적인 운영 및 악기 관리를 위해 임시휴무일을 정하여 휴관할 수 있다.

③ 대표이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악기도서관’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대여 및 악기의 사용

제3조(대여자격) ‘악기도서관’의 악기는 성남시민 누구나 대여할 수 있으며, 성남시 소재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성남시 소재 직장의 직장인, 성남시에 세금을 납부하는 자, 성남시 소재 기관 및 시설로 제한하며, 대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대여 및 반납)

- ① 개인 대여 시 악기종류의 구분 없이 1인 1악기로 제한한다.
- ② 악기대여 및 반납시간은 화요일~토요일, 10:00 ~ 17:00로 한다.
단 12:00~13:00 점심시간은 제외한다.
- ③ 반납은 대여자 본인이 반납당일 예정 시간 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 ④ 악기 대여와 반납은 ‘악기도서관’ 직접 방문을 원칙으로 한다.
- ⑤ 반납일시 변경 및 반납시간 지연에 따라 부과되는 연장대여료는 매월 요금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⑥ 휴관일 반납은 불가하므로 휴관 일에 대여 악기 사용이 끝나는 경우 차일에 반납할 수 있다.

제5조(대여방법과 신청) ①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대여 최소 2일 전 사전 신청해야 한다.

② 대여방법은 사전 신청 한 대여자 본인이 신분증(증빙서류)을 지참해 직접 ‘악기도서관’ 방문 후 <붙임 1> 대여 신청서와 개인 정보 수집 동의서를 작성한 뒤 대여료 납부 후 악기를 대여 할 수 있다.

③ 단체나 기관이 대여할 경우 대표자 혹은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여한다.

제6조(대여 중지 및 제한) ① ‘악기도서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악기도서관’의 악기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대여자가 대여한 악기를 다른 자에게 재 대여하는 경우
4. 대여한 악기의 파손 혹은 분실 등 대여자 과실로 발생한 문제에 ‘악기도서관’ 운영세칙 제9조에 따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5. 대여자가 무단으로 반납 일을 초과한 경우 초과 일 수를 개월로 환산하여 대여를 제한.
6. 단체 또는 기관 대여는 악기도서관 잔여 악기 수량을 고려해 ‘악기도서관’ 담당자가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대여기간 및 대여료) ① 악기 대여료는 <붙임2>의 ‘악기도서관 악기대여료’에 의한다.

② 악기 대여료는 1개월 단위로 부과한다.

③ 악기 대여 최대 기간은 연중 5개월로 하되 1회에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악기도서관’ 운영규정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본 대여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대여료 환불) 납부된 대여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재해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대여료 전액 반환

2. ‘악기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에는
대여료 전액 반환

제9조(대여자 준수사항 및 책임) ① 대여자의 부주의나 실수로 악기를 파손하였을 경우, 수리비용은 대여자 본인이 부담한다.

② 악기를 분실하였을 경우 또는 심각한 파손으로 인하여 악기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시에는, 대여자 본인이 동일한 모델로 대체하여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악기의 동일 모델이 단종 시에는 동일 사양(등급) 이상의 악기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악기도서관 담당자’와 함께 협의 및 악기 테스트를 해야 한다.

③ 변상책임을 고의적으로 기피한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④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악기 대여 시, 대여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등본과 보호자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악기도서관’의 악기 대여·반납 시에는 대여자 본인이 ‘악기도서관’ 담당자와 함께 악기의 품목, 작동상태, 파손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점검 후에는 악기량 대여 신청서와 서약서에 서명을 해야 한다.

악기 기부

제11조(기부의 범위) ① 제3조의 사항과 같다.

제12조(기부 자격) 개인, 단체, 기업 등 누구나 악기를 기부할 수 있다.

제13조(기부 신청) ① ‘악기도서관’에 악기기부 의사를 밝히면 기부자가 ‘악기도서관’에 직접기부 또는 ‘악기도서관’ 담당자가 지정된 악기수거 날짜에 방문하여 기부를 받을 수 있다.

② 모든 기부악기는 ‘악기도서관’ 담당자가 악기상태 점검 후 기부 받으며 악기상태에 따라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악기 기부가 제한될 수 있다.

③ 기부자가 <붙임3>의 기부 신청서를 작성한 뒤 최종 기부가 완료된다.

④ 기부자가 요청할 경우 <붙임4>의 기부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악기 관리 및 수리

제14조(악기 보관) 기부 받은 악기는 악기명, 악기번호, 기부자 등의 내용이 들어간 기부악기 관리카드 작성 후 악기랑에 보관 및 관리한다.

제15조(악기 수리 기준) ① 기부 받은 악기는 대여자에게 대여되기 전에 ‘악기도서관’의 협력 악기사를 통해 ‘악기수리확인서’를 작성한다.

② 반납된 악기는 악기랑 담당자 또는 협력 악기사의 악기상태 점검을 통해 악기 수리여부를 결정한다.